

우리나라 옷의 변천

石 宙 善

의복(衣服)은 인간(人間)의 본능(本能)과 자연(自然)을 극복(克服)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성(必要性)에서 인류(人類)의 역사(歷史)와 더불어 발전(發展)하여 왔다.

삶의 삼대요소(三代要素)인 의(衣), 식(食), 주(住) 중 의복(衣服)은 과연 한 시대(時代) 한 민족의 물질적 생활면을 잘 보여 준다.

하나, 인간(人間)은 언제까지나 기후(氣候)를 비롯한 풍토적(風土的) 조건(條件)에 얽매어 있지는 않았고, 인간사회(人間社會)는 점차 복잡(漸次 複雜)하게 발달(發達)하여 갔으며, 종교문화(宗教文化) 또는 예술(藝術)의 내적생활면(內的生活面)도 보다 깊고 넓어져 갔다.

이리하여 의복(衣服)은 원래의 공리적(功利的) 태두리를 벗어나 한 민족(民族)의 사회제도(社會制度) 관습(慣習) 전통(傳統) 등(等) 그 역사(歷史)를 비추어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나라 의류문화(衣類文化)를 통(通)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民族)의 역사적(歷史的) 변천을 볼 수 있다.

정치(政治), 경제(經濟), 문화(文化), 예술(藝術) 전반(全般)에 걸쳐 우리 백성은 지리상 인접(地理上 隣接)하여 있는 중국(中國)의 영향권 밖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의복제도(衣服制度)도 따라서 예외(例外)일 수는 없었다.

대개 우리 역대(歷代) 의복제도(衣服制度)에 삼대변혁(三大變革)이 있었다.

즉(卽), 신라(新羅) 진덕왕(眞德王) 3年(649)에 김춘추(金春秋)가 당(唐)나라에 들어가 태종황제(太宗皇帝)로부터 의대(衣帶)를 하사(下賜)받아 가지고 돌아와 우선 남자(男子)의 의복(衣服)을 당(唐)나라 제도로 고치고, 문무왕 4年(664)에 여자의복(女子衣服)마저 당(唐)나라 제도로 고치게 한 것이 제일차변혁(第一次變革)이었고, 고려충렬왕(高麗忠烈王) 4年(1278)에 백성들에게 영(令)을 내려 원(元)나라 의복(衣服)을 입게 한 것이 第2次변혁(變革)이었다.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19年에 원(元)나라 의복제도(衣服制度)를 명(明)나라 의복제도(衣服制度)로 바꾸게 하고, 그후 우왕(禑王)이 명(明)나라 제도와 원(元)나라 제도를 뒤섞어 쓴 까닭에 공양왕(恭讓王) 3年에 다시 명(明)나라 제도로 의복제도(衣服制度)를 일정하게 한 것이 第2次변혁(變革)이었다.

우리 나라의 남녀의상(男女衣裳)이 전부중국(全部中國)으로부터 들어온 데도 불구하고 第1次변혁(變革)에서부터 第3次변혁(變革)까지는 70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한다.

1. 백의(白衣)착용(着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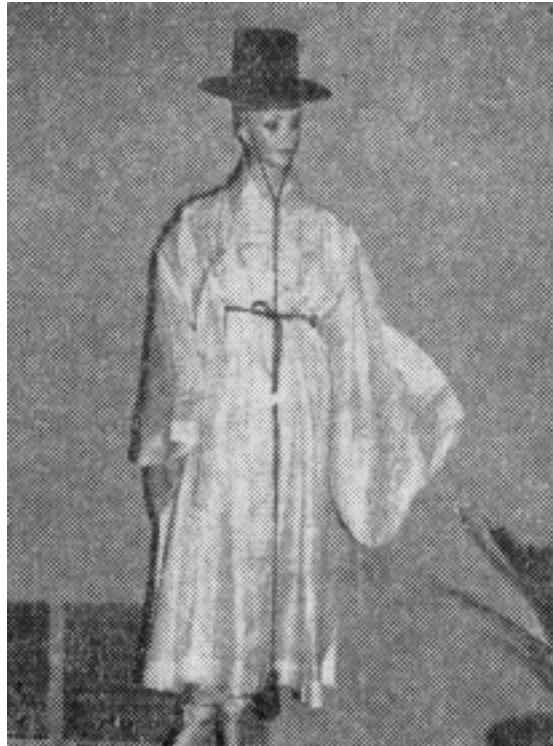
부여인(扶餘人)으로부터 백의(白衣)를 애착(愛着)하게 된 것이 삼국시대(三國時代)에 와서도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 사람들은 모두 백의(白衣)를 편상(偏尙)하였으며, 고려인(高麗人)도 심하지는 않았으나 의연(依然)히 백의(白衣)의 습속(習俗)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입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고려중엽(高麗中葉) 이후로 백의(白衣)를 금(禁)하고 청의(靑衣)를 입게 하고, 세종조(世宗朝)에는 황색(黃色)을, 성종조(成宗朝)에는 아청(鴉靑) 초록(草綠) 목홍(木紅)을, 선조조 임진란(宣組朝 任辰亂) 이후(以後)에는 사대부(士大夫)가 홍의(紅衣)를 입었던 것이다.

명종(明宗) 이후 국홀(國恤)이 잦으면서 백성들의 백의착용하는 것이 습관(習慣)이 되고 말았다.

현종(顯宗) 때부터 다시 백의(白衣)를 금하고, 숙종 17年(1691)에는 백의착용을 금(禁)하는 동시 국법(國法)으로 청의(靑衣)를 착용(着用)하도록 하였다.

영조조(英祖朝)에 와서는 조정(朝廷)의 문무백관(文武百官)을 비롯해서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무색옷을 입도록 영(令)을 내려서, 그 후 청창의 청중치막도 선비를 사이에 서는 어느정도 착용(着用)였으나 서민층(庶民層)은 고질적인 습관에 젖어 고치지를 못하고 마냥 백의(白衣)에만 의존(依存)하였던 것이다.



<도포(道袍)>

우리 나라에서는 조관사서(朝官士庶)가 평소(平素)의 옷옷으로 도포(道袍)를 입었는데 색깔로는 청(靑), 백(白) 두 색깔을 입었다.

길복(吉服)으로는 청색(靑色)을, 상복(常服)으로는 백색(白色)을 착용(着用)하였다.

여기서도 귀천(貴賤)을 가리기 위해서 천(賤)한 자(者)는 옷을 못 입게끔 되어 있었고, 유생(儒生)은 도포(道袍)를 공복(公服)으로도 착용(着用)하고 제복(祭服)으로도 착용(着用)할 수가 있었다.

2, 의관제도(衣冠制度)

이조태조(李朝太祖) 3년(1394)에 명(明)나라 태조(太祖)가 구장면복(九章冕服)과 규(圭), 패옥(佩玉)을 하사(下賜)하는 동시에 왕비(王妃)에게는 주취칠적관(珠翠七翟冠) 하피금추(霞帔金墜) 등(等)을 하사(下賜)하였다.

그 후 태종(太宗) 2년(1402)에 구장면복(九章冕服)을 받으니 내용인즉 옥규(玉圭), 면류관(冕旒冠), 회의(繪衣) 등(等) 오장(용(龍), 산(山), 화(火), 화충(華虫), 종이(宗彝)을 그린 옷이다. 그 외의 훈회상(纁繪裳) 대대(大帶) 백회중단(白繪中單) 패옥(佩玉) 홍수(紅綬) 백라방심곡령(白羅方心曲領) 훈회폐슬(纁繪蔽膝), 말(襪) 적석(摘烏) 등(等)이다.

왕비(王妃)의 관복(冠服)은 명(明)나라에서 사람을 보내와 적의(翟衣)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간 후부터 국내(國內)에서 짓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당시(當時) 국내(國內)에서는 배를 생산하여 백성들에게는 오승포(五升布)를 착용(着用)하도록 하였다.

태종조(太宗朝)에 허조(許稠)가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있을 무렵, 상하(上下)의 의관제도(衣冠制度)를 정하니 지각없는 재상(宰相)들은 화려한 속에서 제도(制度)에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의관(衣冠)을 착용(着用)하므로 이를 수치재상(瘦鷹宰相)이라 불렀던 때도 있었다.

태종(太宗)의 왕자(王子) 성녕군(誠寧君)이 중국천자(中國天子)로부터 서대(犀帶)를 하사(下賜)받은 후로 왕자대(王子帶)는 서대(犀帶)로 정(定)해졌다. 풍기(風紀)가 문란해짐을 우려하여 나라에서는 국법(國法)으로 당상관이상(堂上官以上)은 사라롱단착용(紗羅綾緞着用)을 허용(許用)하고 국가(國家)의 제복(制服)인 단령(團領)만은 국산품(國産品)으로 겨울에는 명주(明紬), 여름에는 마포(麻布)를 착용(着用)토록 하게 하였다.

세종(世宗) 12년(1430)에 집현전(集賢殿)에 부탁하여 주척(周尺)을 고정(考正)케 하니 고척(古尺) 주척(周尺) 포백척(布帛尺) 곡척(曲尺) 평시정척(平市正尺) 먼주척(綿紬尺) 저포척(苧布尺) 영조척(營造尺) 침척(針尺) 황종척(黃鐘尺) 예기척(禮器尺) 등(等) 여러 종류로 이것이 모두 우리 일상생활에 기본(基本)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이듬 해에 대소신(大小臣)의 가사제도(家舍制度)를 정하고, 이것도 품위(品位)에 따라 상하계급(上下階級)을 가리면서 삼품이상(三品以上)을 대부(大夫), 오품이하(五品以下)를 사(士)라고 불렀다.

세종(世宗) 17년에 당(唐)나라로부터 계속 사모(紗帽)를 들여다 쓰니 그 당시의 승지조위(承旨曹偉)는 우리 나라 의관제도(衣冠制度)는 확실히 중국제도(中國制度)와 흡사하다고 말하였다 한다.

세종(世宗) 20년에 명(明)나라 영종(英宗)이 원유관강사포(遠遊冠絳紗袍) 패옥(佩玉) 적도(赤島) 등(等)을 예조판서(禮曹判書)에게 하사(下賜)하였다. 그는 곧, 임금에게 착용(着用)케 한 것이 지금까지 전(傳)해 내려온 강사포(絳紗袍)라고 한다. 임금은 군신(群臣)들 앞에서는 강사포(絳紗袍)를, 장교(將校) 앞에서는 곤용포(袞龍袍)를 착용(着用)하였

다.

임금이 종묘(宗廟)에 배례(拜禮)할 때나 내전(內殿)에 들 때에는 감색(紺色) 무명옷을 입고 청초혜(靑草鞋)를 신고, 입자(笠子)에는 목영(木纓)을 사용하여 검소(儉素)한 몸차림으로 사치(奢侈)롭던 습관(習慣)을 일변시켰던 것이다.



<관복(官服)>

그 당시(當時), 사대부(士大夫)는 한때 황의(黃衣)를 입었으나 우의정허조(右議政許稠)만은 상시(常時) 회색(灰色) □확(□襪)을 입었다. 황색(黃色)에 비해 회색(灰色)은 검소한 색(色)이라서 회색(灰色)을 애용하였으나 조신(朝臣)들은 평소(平素) 황색(黃色) □확(□襪)을 입었던 것이 선조(先祖)의 여습(餘習)이 스스로 변하면서 근절(根絶)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것이 바로 세속(世俗)에 따르는 변천이라고 할 수 있다. 유생(儒生)은 청의(靑衣)를 입고 두건(頭巾)을 쓰고, 외출시(外出時)에는 더욱 예의(禮儀)를 갖추도록 하였다.

3. 이조(李朝)의 조복(朝服)



진관의복 전면



금관의복 후면

관(冠)에 있어서는 일품(一品)이 오량관(五梁冠), 이품(二品)이 사량관(四梁冠), 삼품(三品)이 삼품관(三品冠), 사품(四品)~육품(六品)이 이량관(二梁冠), 칠품이하(七品以下)가 일량관(一梁冠), 관(冠)에 사용되는 목잠(木簪)만은 명품(名品)이 동일(同一)하다.

조복(朝服)은 일품(一品)~이품(二品)이 적초의(赤綃衣) 적상(赤裳) 폐슬(蔽膝) 백초중단(白綃中單) 운학금환수(雲鶴金環綬)를, 삼품(三品)~구품(九品)은 적초의(赤綃衣) 적상(赤裳) 폐슬(蔽膝) 백초중단(白綃中單)을 착용(着用)하고 후수(後綬)만은 품위(品位)에 따라 문양(紋樣)의 차이가 있다. 삼품(三品)은 반조은환수(盤鵬銀環綬), 사품(四品)은 연작은환수(練鵲銀環綬), 오품(五品)~육품(六品)은 연작동환수(練鵲銅環綬), 칠품(七品)~구품(九品)은 계척동환수(鷓鴣銅環綬)를 사용하였다.

대대(大帶)는 각 품(各品)이 공통(共通)으로 홍백단(紅白緞)을 겹으로 해서 띠고, 그 위에 혁대(革帶)는 일품(一品)이 서대(犀帶), 정이품(正二品) 판금대(板金帶), 종이품(從二品) 소금대(素金帶), 또는 여지금(荔枝金), 정삼품(正三品) 판은대(板銀帶), 종삼품(從三品) 소은대(素銀帶), 사품(四品)은 종삼품(從三品)과 동일(同一)하고, 오품이하(五品以下)가 각대(角帶)를 사용하였다.

홀(笏)은 일품(一品)~사품(四品)이 상아홀(象牙笏), 오품(五品)~구품(九品)이 목홀(木笏)을 든다. 화(靴)는 각 품(各品)이 동일(同一)하게 흑피화(黑皮靴)를 신었다.

패옥(佩玉)은 삼품이상(三品以上)이 번청옥(燐靑玉), 사품이하(四品以下)가 번백옥(燐白玉)을 사용하였다.

4. 이조(李朝)의 공복제도(公服制度)

우리 나라에서는 량(梁) 있는 관(冠)과 적초의(赤綃衣)를 맞추어, 조복(朝服)이라 하고 흑단령(黑團領)을 시복(時服)이라 불렀다. 또한 홍단령(紅團領)을 상복(常服)이라 하고 첩리(帖裏)를 용복(戎服)이라고 불렀다.

국속(國俗)으로 전부터 유관직자(有官職者)는 홍단령(紅團領)을 착용(着用)하였다. 중국(中國)에서는 조선(朝鮮)의 복색(服色)은 군신(君臣)이 동색(同色)으로 입는다는 것부터가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난리(亂離)후 창졸간에 사대부(士大夫)는 거의 다 첩리(帖裏)를 입었다. 기해년(己亥年)(1599)간(間)에 중국(中國)을 모방하여 입었던 것을 신축년(辛丑年)(1601)에 이르러 예조판서(禮曹判書) 류근위(柳根爲)가 건의하여 흑단령(黑團領)을 입게 하고, 평시(平時)에는 홍색(紅色)을 입게 하여 지금에 이르니 이것은 인정상(人情上) 구제도(舊制度)에 따르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라 하였다.



<첩리(帖裏)>

인조조(仁祖朝)에 이미 쓰여 오던 수정대(水精帶)는 구제(舊制)에 의지한 것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중국(中國)에서 처음 수정대(水精帶)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후 유사(有司)에게 청하여 대(帶)에는 청옥(靑玉)을 사용케 한 것이 혼동(混同)되는 바 있어 임 금은 수정대(水精帶)를 착용(着用)하도록 지시하였다.

임금은 령(令)을 내려 조신(朝臣)들은 사모(紗帽)를 쓰고 외출시(外出時)나 승마출행시(乘馬出行時)에도 사모(紗帽)를 쓰게 하니, 영의정(領議政) 김유(金瑬)가 청(請)하기를 문무백관(文武百官)이 다 사모(紗帽)를 쓰고 이품 이하(二品 以下)까지도 승마시(乘馬時) 백관(百官)과 같이 쓰게 하니, 백관(百官)의 계급(階級)을 가리기 어려운즉 제도를 뚜렷이 하도록 하게 하였다.

선조조(宣祖朝)에 상복(常服)에는 대(帶)와 사모(紗帽)를 갖추고 품대(品帶)는 할 수 없었다. 사복(私服)은 원전(原典)에 기재(記載)된바 없어 착수의(窄袖衣)에 전복(戰服)을 입고 사대(糸帶)를 사용한 것은 우리 나라 예(例)에 따른 것이고, 생략(省略)과 간편(簡便)을 취하였을 뿐 신식(新式)을 병행(□行)한 것은 아니었다. 임시변통으로 된 상복(常服)과 사복(私服)은 통편(通編)과 회전(會典)을 참작하여 본래 있던 예(例)를 인용(仍用)하였을 따름이다.

사복(私服)으로 입던 착수의(窄袖衣)는 귀천(貴賤)없이 누구나 다 상복(常服)으로 입고 도포(道袍) 직령(直領) 창의(擎衣) 중의(中衣) 등 지금이나 이 후에도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관직(官職)에 있는 자(者)는 착수의(窄袖衣)에 전복(戰服)을 입고 서역재관(胥役在官)도 동일(同一)하게 입었다.

유생(儒生)은 진견(進見)할 때 제복 유건 화자(齊服 儒巾 靴子)를 착용(着用)하였는데 이것은 구제도(舊制度)에 의(依)한 것이고, 그외에 반령착수의(盤領窄袖衣)에 사대(糸帶)를 착용(着用)하였다.

생원 진사 유학(生員 進士 幼學)은 착수의(窄袖衣)를 입고 서민(庶民)도 이를 입기는 했으나 시역(厮役)과 같은 모양이었다. 착수의(窄袖衣)에 색깔의 □(천천□)을 두르기도 하고 그냥 입기도 하였다. □창(□)은 한치 넓이로 하고 도예(徒隸)는 □(□)을 금(禁)하였다. 무관직자(無官職者)는 기라릉단(綺羅綾緞)을 금(禁)하고 넓은 띠를 앞에서 고리로 멈추게 되어 있었다.



전복(戰服)

선조조(宣祖朝)에 관복(官服)을 제정(制定)하는데 개량(改良)된 반령(盤領)은 보기에 구차하니 구례(舊例)에 의지해 착수의(窄袖衣)를 입게 하고, 원래에 입던 홍단령(紅團領)은 흑염(黑染)하여 입게 하고, 새 것을 만들 때에는 옷감에 있어 유문 무문(有紋 無紋)을 가리지 말도록 하였다. 생원 진사 유학(生員 進士 幼學)은 당제(唐制)에 따라 □확(□襖)을 입게 하였다. 근자의 전복제도는 옛날 반비의(半臂衣) 또는 작자(綽子)라 부르기도 했고, □확(□襖)는 당(唐)나라 때 선비들이 다투어 가며 입었던 옷으로 우리나라 조신(朝臣)들도 장복(章服) 안에 꼭 입었다. 속칭(俗稱) 전진복(戰陣服)으로 알려져 왔고 중간에 □(□) 확(襖)로 개칭(改稱)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 나라 의상(衣裳)은 중국(中國)의 문화(文化)를 도입(導入)하면서부터 복식(服飾) 전반(全般)에 걸쳐 다양화(多樣化)하기 시작(始作)하였다. 압도적(壓倒的)인 중국문화(中國文化)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 문화(文化)는 완전(完全)히 질식(窒息)하지는 않았고, 그 자체(自體)의 생명을 면면(綿綿)히 이어왔다. 종류(種類), 모양(模樣)의 다양(多樣)함, 다채(多彩)로운 색깔, 기품(氣品)있는 계급적 표시(階級的 表示) 등(等)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의 고전의상(古典衣裳)은 우리 민족(民族)의 사회제도(社會制度) 관습(慣習) 전통(傳統) 등(等)을 잘 반영(反映)시켜주고 있다.

(필자(筆者) · 동덕여대 교수(同德女大 教授))

범종(梵鐘)

절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거나 시각(時刻)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종(鐘)이고 일명(一名) 경종당종(鯨鐘撞鐘) 또는 조종(釣鐘)이라고 한다.

직경이척(直徑二尺), 높이 사척(四尺)이 보통(普通)이나 그 모양(模樣)과 크기는 일정(一定)치 않다. 이조(李朝)때 저녁에 종(鐘)을 28번 쳐서 통행금지(通行禁止)를 알리는 것을 인정(人定)이라 하였는데 이 말이 변(變)하여 큰 종(鐘)을 『인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불교(佛敎)가 성(盛)하였던 신라(新羅)때에는 가끔 나라의 온 힘을 기울인 거작(巨作)도 있었으니 754년 경덕왕(敬德王 13年)에 만든 황룡사의 대종(大鐘)(49萬8千5百81근(斤)), 봉덕사(奉德寺)의 대종(大鐘)(성덕왕(聖德王) 신종(神鐘)-황동(黃銅) 12萬근(斤)) 725년(聖德王 24年)에 만든 상원사종(上院寺鐘)(놋 3千300양(兩))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1948년 양양(襄陽)의 설산(雪山)에서 발견(發見)된 신라범종(新羅梵鐘)(정원□년(貞元□年) 재명신라범종(在銘新羅梵鐘)) 일본(日本)에 건너간 몇몇 종(鐘)들이 유명(有名)하다.

고려(高麗) 때의 것으로는 천흥사종(天興寺鐘), 조계사종(曹溪寺鐘), 내소사종(來蘇寺鐘), 연복촌종(演福寸鐘), 탑산촌종(塔山寸鐘) 등(等)을 들 수 있다.